

# <아시테지>

## 선언문

어린이와  
청소년은 예술을  
가까이하고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위기의  
시기에도요.



# <아시테지> 선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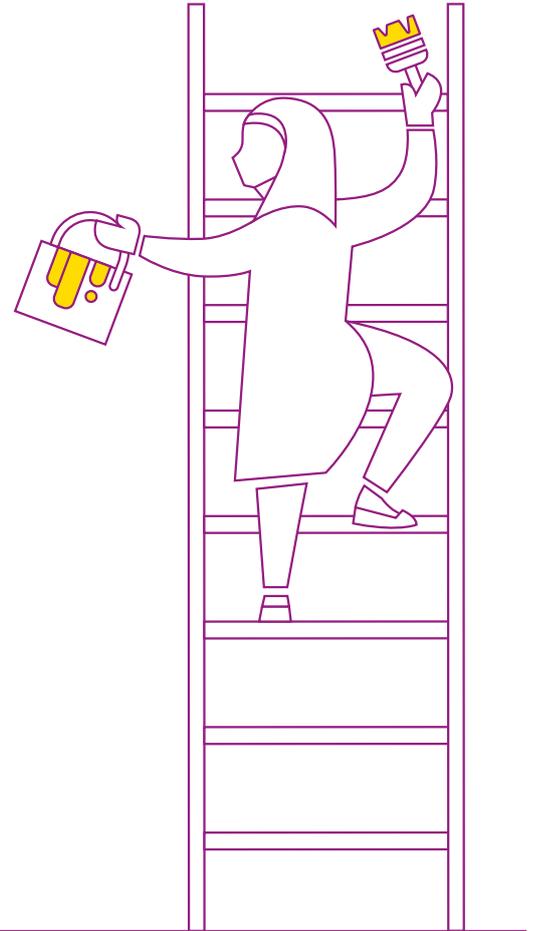
<아시테지><sup>1</sup>(ASSITEJ,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제13조와 제31조와 관련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모든 나라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의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생각하며, 모든 아이들이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보다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를 위한 즉각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또는 그들과 함께 만들고 싶은 세상을 우리는 문화예술을 통해 상상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우리 사회를 위해 보다 나은 환경을 확고히 하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예술은 필수적입니다.

예술은 현재 코로나바이러스의 심각한 영향과 그에 따른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다른 무엇보다도 특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예술(그리고 그것은 만드는 예술가)은 인간성을 표현하고, 성찰하고 그리고 건강과 행복을 이루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는 예술을 가까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위기 상황에서 조차 말입니다.

모든 나라와 지역은 각기 다른 사정, 체제, 관심 등을 가지고 있지만, <아시테지>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예술에 참여함으로써 번성할 수 있다면, 이를 위한 필요한 조치사항에 대한 보편적 표현으로서 이 선언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과의 협의와 협력을 통해 그들을 참여시키고 그들의 의견과 생각을 가능하면 모든 단계에서 반드시 포함시키기를 <아시테지>는 추천하는 바입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2조)<sup>2</sup>



- 1 <아시테지>는 어린이, 청소년 및 그 가족을 위한 연극과 공연예술(다원분야까지 포함)에 헌신하고 있는 국제 협회입니다.
- 2 각 나라별 아시테지 센터들은 각기의 문화적 환경에 맞게 용어를 변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 어린이”라는 용어는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 같은 용어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차별적 용어가 아닌 포용적 용어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아이안>(IIAN, 국제포용예술네트워크)과 이에 대한 대화를 나누길 권합니다.



### 1

## “시민들”에게 다음을 촉구합니다.

- 1.1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문화예술에 참여할 수 있고, 전세계적으로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그들의 당연한 권리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설득하여야 합니다.
- 1.2 장애나 취약계층 또는 다른 어려움에 처한 어린이/청소년들을 위한 활동을 하는 예술단체와 예술가 사이의 연대를 증진하여 난민촌이나 병원, 고아원, 소년원 등 모든 영역에서 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확고히 합니다.
- 1.3 다양한 환경 속에도 이 선언문을 널리 전파하고, 특수한 환경에서의 활용을 위해 이 선언문을 알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 2

## “정부와 국가”에 다음을 촉구합니다.

- 2.1 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성장과 행복을 지원하기 위해 부처 간 협력을 통한 범정부적인 전략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환경부, 중기부 등)
- 2.2 어린이 청소년들의 문화적 권리가 우리 사회의 건강함, 회복력, 포용력 증진의 핵심이라는 것이 포함된 정책들을 수행해야 합니다.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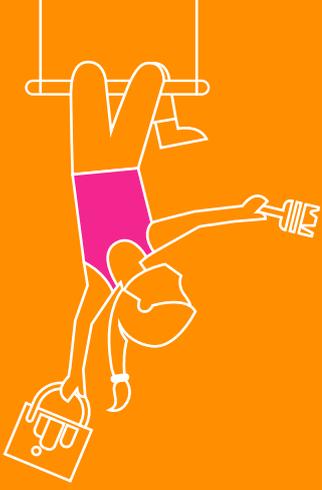
#### “정당들”에 다음을 촉구합니다.

- 3.1 정당 선언문이나 정강정책, 정책우선순위에서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3조와 제31조가 구체적이고 특별하게 언급되어야 합니다.
- 3.2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3조와 제31조를 실현하기 위해 일관성 있고 포용적이고도 장기적인 정책들을 채택해야하며, 이런 정책들을 지원을 위해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 3.3 교육기관을 위한 지침을 만들어 교과과정에 예술이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 3.4 정당의 정책개발과 의사결정과정에 어린이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 4

#### “교육부”에 다음을 촉구합니다.

- 4.1 학교 교과과정에서 창의성, 놀이, 예술이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 4.2 교·강사 트레이닝 분야에서 예술분야가 한자리를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4.3 예술강사나 예술종사자가 존중받는 전문가로서 학교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 4.4 문화적 경험을 막는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그리고 기타 다른 장벽들을 없애야 합니다.



## 5

### “문화체육관광부”에 다음을 촉구합니다.

- 5.1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공평하고 온전하게 예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일관적이고 장기적인, 적절한 예산과 전략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

- 5.2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아무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 프로그램 제공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

- 5.3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예술이든 성인을 위한 예술이든, 예술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

- 5.4 어린이 청소년 인구수가 반영된 비율의 예술 예산을 확실히 확보해야 합니다.

---

- 5.5 어린이와 청소년, 그 가족들을 위한 예술과 그들에 의한 예술에 대한 국제적인 지원 모델에 관한 연구를 의뢰하고, 찾아 나서고, 이를 공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실천사례들에 대한 표준을 도입, 적용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 6

### “지역정부관계자” 들에게 다음을 촉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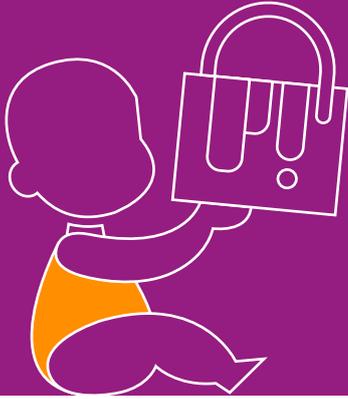
- 6.1 지역사회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예술의 역할에 대한 가치를 높이 부여해야 합니다.

---

- 6.2 지역의 접근 가능한 자원들, 시설들, 공용 공간들을 제공하여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 그 가족들이 예술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 6.3 학교와 지역의 예술기관 및 단체 간 협력관계를 북돋우고 지원해야 합니다.



### 7

## “문화예술위원회”에 다음을 촉구합니다.

- 7.1 주요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이 접근가능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작품이나 작업을 증진해야 합니다.

---

- 7.2 어린이와 청소년 및 그 가족을 위한 작품이나 작업이 성인 관객을 위한 작품이나 작업과 동등한 지위를 차지한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

- 7.3 1세부터 19세까지의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예술에 대한 별도의 정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

- 7.4 국가별 또는 권역별, 전지구적 목적으로든,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예술이 예술위원회와 지역정부관계자와의 협력에서 주안점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

- 7.5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을 위해 인구비율에 따라 충분한 예산을 확보,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예술에 대한 접근과 수준은 높이 유지하고 티켓 가격은 낮게 유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8

## “예술단체와 기관 (공연장 등)”에 다음을 촉구합니다.

- 8.1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 최대한 가장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이 되도록 목표를 잡아야 합니다.

---

- 8.2 전체 프로그래밍에서 어린이, 청소년, 그 가족을 위한 작업(작품)이 중요한 분야가 되어야 합니다.

---

- 8.3 교육부서가 작업이나 작품에서 파트너이자 수혜자로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

- 8.4 어린이와 청소년이 이사회 또는 다른 어떤 결정 과정이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

- 8.5 어린이, 청소년 및 그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과 공간에, 그 참여를 막는 다양한 장애물들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 9

## “학교 및 유치원 등 취학 전 기관”에 다음을 촉구합니다.

- 9.1 학교 교과과정에 핵심 부분으로 문화예술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교육부의 지지를 구하도록 노력합니다.
- 9.2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여가 시간을 주어야 하고 창의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9.3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가능하면 최대한 폭넓은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9.4 아이들의 예술적 성취와 경험을 그들의 부모와 보호자들이 소중히 여기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 9.5 창의적 활동과 예술을 교과학습 전체의 필수적인 것으로 여기게 해야 합니다.

### 10

## “언론기관”에 다음을 촉구합니다.

- 10.1 전국을 커버하는 언론기관이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그 가족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에 주요한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를 더 증대시켜야 합니다.
- 10.2 어린이, 청소년 및 그 가족을 위한 언론사 프로그램들이 모두가 접근가능하고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어린이, 청소년들의 생활과 언어, 문화다양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 10.3 공공 방송인은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특별한 책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를 인식해야 합니다.

## 아시테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 11.1 전문 예술가와 모든 관련된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구체적 행동방안에 대하여 토론하고 협력하여 아동청소년 예술을 국가단위에서나 권역별로 또는 국제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 11.2 다양한 나라들로부터 예술/교육/정부 사이의 협력사례들이 포함된 좋은 실천사례들을 수집하여 정치적 성공이든, 개별적 성공이든 성공사례집을 만들겠습니다.
- 
- 11.3 예술과 행복, 정신적 건강이 연결되어있다는 증거들을 제시하겠습니다.
- 
- 11.4 첨단 전문가 패널들을 모시고 몇몇 분야(예를 들어 사회개발, 교육, 건강)에서 예술이 얼마나 차이를 만들고 중요한지를 탐구할 것입니다.
- 
- 11.5 정부나 다른 기관에 보내는 견본 편지 양식을 제작 보급하고, 아시테지 회원(국가회원, 네트워크회원, 개인회원)을 돕기 위한 편지를 써서 이 선언문이 더 널리 퍼지도록 하겠습니다.
- 
- 11.6 이 선언문을 확대하기 위해 회원들을 지원할 것이며,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하겠습니다.

## (참고) 유엔 아동권리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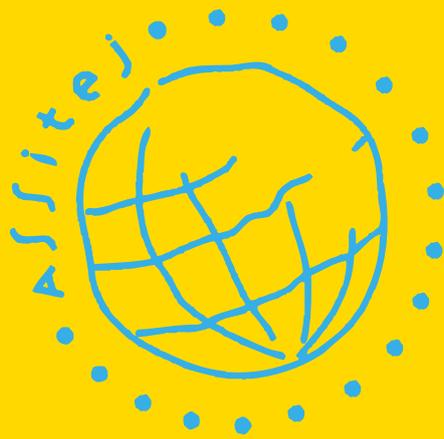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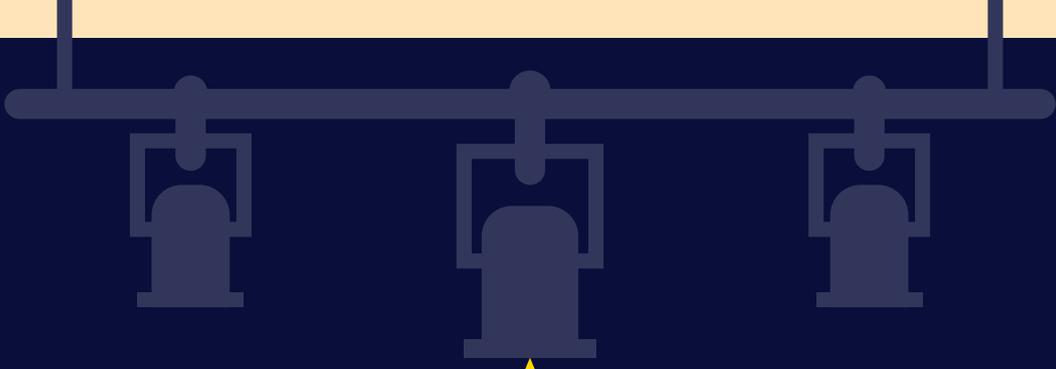
### 제13조

어린이는 표현에 대한 자유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어린이가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 제31조

모든 어린이는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정부는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어린이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www.assitej-international.org](http://www.assitej-international.org)